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1

목 차

목 차	9 - 1
제1장 총 칙	9 - 2
제2장 위원회의 구성	9 - 2
제3장 위원회의 운영	9 - 3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9 - 5
제5장 보칙	9 - 8
부 칙	9 - 9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간사는 경영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3

-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6조(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정기위원회는 결산보고에 맞추어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4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 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5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 · 개정
-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6)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7) 회사가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11조(관계인의 출석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13조(선임)

- ① 위원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2)
- ②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미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 13 조 4 항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 에 의한다.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6

- ⑤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외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 3 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외부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7

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제17조(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 16조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체결 2 주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위원 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18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8

제19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① 위원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주주총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EUSU HOLDINGS CO., LTD.

환경/안전 품질업무절차서	문서번호 : HCA-02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일자 : 2021.03.30 페이지 : 9 - 9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